

코로나19(COVID-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5차)

- ※ (시설급여)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재 안내
 - 기존 한시적 적용방법(4차)은 동일(평가지표 번호 변경 반영 등)
 -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 ※ (재가급여) 기존에서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2021. 2.

□ 기본원칙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다빈도 질의사항을 반영한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안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 질병관리본부



※ 작성일(2021.2.8.)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에 해당될
 - 2020.1월 말 경계 단계 격상, 2020.2월 중순 심각단계로 격상된 뒤 심각단계 지속

○ 일반사항(급여종류 전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평가기준 예외 적용
 - '주의' 이하의 단계일 경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
 -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 자제, 외출·외박 제한 (외부인 출입제한,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등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 일부 한시적 예외 기준 적용 ... **【붙임】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변경 시 평가지표 적용 방법

-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 월의 익월부터 기존의 평가지표(기준) 및 평가매뉴얼 적용함

(예시)

- '20년 5월 '경계' → '주의'이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 시행 지표 정상 적용
- '20년 6월 '경계' → 주의'이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상반기) 시행 지표 미실시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

- 코호트 격리 시 충족으로 일괄 인정되는 기준은 없음

-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로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확인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코로나19 관련 치료 내역 등 증빙 필수

- 증명된 사항과 관련된 지표 및 기준에 대해 격리 기간 동안 완화하여 평가

○ 지표별 적용방법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정상 적용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 지표별 적용방법은 안내차수(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하로 변경되지 않을 시 2021년에도 연속하여 적용예정**
- 감염병 유행상황 및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라 적용 차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 ...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연번	게시번호	등록일	제목
1	60437	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2	60451	2020.2.2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3	60509	2020.6.1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4	60561	2020.10.27.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4차) 안내

※ 동일한 평가지표인 경우에도 **안내 차수에 따라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유의**

□ 평가지표별 한시적 적용방법 ... 구체적 사항 【붙임】 참고

○ 재가급여

연번	급여종류(지표번호)	평가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1	요(2),목(2),간(2)	직원 회의	1차	감염병 관련 증상이 없는 직원 중 50% 이상을 매월 1회 이상 소집하여 회의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실시하여야 인정함	~1월
			2차	해당월 근무 직원의 50% 이상을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 방법으로 회의를 실시한 경우 인정함	2월~
2	요(5),목(4),간(4),주(7),단(7)	건강검진	5차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1년상반기
3	요(14),목(15),간(14)	방문상담관리	1차	감염병 관련 유사 증상이 직원(또는 수급자 등)에게 나타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도 실시하여도 인정함	2월~
4	요(27),목(29),간(28),주(42),단(39)	사례관리회의	1차	2인 이상 참여시 인정하므로 사례관리 회의를 미실시하는 경우 불인정함	2월~
5	주(3),단(3)	자원봉사자	1차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2월~
6	주(19),단(19)	소방시설	3차	소규모 또는 서면 교육 등 교육실시하여야하며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6월~
7	주(20),단(20)	재난상황대응훈련	3차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행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함.	상반기~
8	주(25)	가족과의소통	1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보호자 회의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사실관계(보호자 회의 관련 내·외부 공문 등)	~상반기
			3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보호자 회의를 대면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을 확인하여 인정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하반기~
9	주(37), 단(36)	프로그램, 기능향상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임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월~
			2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	6월~
10	복(13)	수급자 상담관리	1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 경우로 인정하여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으로 실시하여도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2월~

○ 시설급여

연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 기간
1	3(3)	운영위원회	1-2차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분기 (2~6월)
			3차~5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함 ※ 확인사항: 일자, 회의방법, 회의내용(안건, 참석자별 의견 등), 참석자 ※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여 및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대면 방법 개최 시 참석자 서명은 확인하지 않음	3분기 (7월~)
2	7(6)	인적자원개발	4차~5차	기준④의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 을 현장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기존의 실시계획, 이수증, 교육비 납부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이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교육 주최 기관에서 발송한 실시 관련 공문, 교육주최기관 홈페이지 주소, 교육이수 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자 등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 불인정	연중
3	8(7)	건강검진	5차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1.상반기
4	12(11)	지역사회자원 활용	1차~5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기존 202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기준①~③ 내용과 동일	2월~
5	22(21)	재난상황 대응	3차~5차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함	상반기~ (20년~)
6	27(26)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4차~5차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시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 ※ 기존 20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의 기준④에서 파생된 지표	연중

연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 기간
7	29(28)	노인 인권보호	3차~5차	3분기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자간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라도 개최하여야 하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에게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1,2분기에는 사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표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 운영에 반영한 경우도 인정함(연번1의 1-2차 참고)	3분기 (7월~)
8	33(32)	사례관리	4차~5차	사례회의 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의 의견을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렴하는 등 직종별 다양한 직원의 의견을 반영위해 노력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특정직종에서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하게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관계(관련 근거자료 등)를 확인하여 평가함.	'20년~
9	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1차	계약의사(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2월~10월
			4차~5차	수급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함. 다만,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계약의사가 방문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번호(6045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안)' 참조	11월~
10	43(41),44(42)	인지기능 증진서비스, 여가 활동서비스	1차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월
			2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	2월
			4차~5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11월~

붙임 한시적 예외적용 평가매뉴얼(지표 및 기준) 다빈도 Q&A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공통 : 일반사항

Q1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일반사항 ... 추가(3차)

Q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국내 최초 발생한 2020.1.20일을 주의 단계로 시작하여 2020.1.27. 경계단계, 2020.2.23. 부터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안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 변화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안내 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통 : 요(2), 목(2), 간(2) 직원회의 ... 추가(2차)

Q3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로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A3	직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회의는 해당월 근무 직원의 50%이상 유선 등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통 : 요(2), 목(2), 간(2) 직원회의

Q4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일부만 참석하여 직원회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참석 대상의 50%이상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나요?
A4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일 경우 인정되므로 감염병 관련 증상이 없는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실시해야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자 및 격리자 등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누적참석률이 50%이상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14), 목(15), 간(14) 방문상담관리

Q5	코로나19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매월 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5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감염병 관련 유사 증상이 직원(또는 수급자 등)에게 나타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27), 목(29), 간(28) 주(42), 단(39) 사례관리회의

Q6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례관리회의를 미루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A6	직종구분 없이 2인 이상 참여하여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거나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더라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므로 미실시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공통 : 주(3), 단(3) 자원봉사자

Q7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7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공통 : 주(19), 단(19) 소방시설 ... 추가(3차)

Q8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직원 및 수급자가 모이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A8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이 집합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또는 서면교육 형태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하며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이 확인되어야 평가에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공통 : 주(20), 단(20) 재난상황 대응훈련 ... 추가(3차)

Q9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9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의 단계일 경우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재난대응 도상훈련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로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가 확인되어야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5) 가족과의 소통 ... 추가(3차)

Q10	코로나19로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10	2020년 7월(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회의를 실시 하여야하며,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서명(참석자명으로 같음)

주(25) 가족과의 소통

Q11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들이 모일 수 없는데 보호자 회의를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나요?
A11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보호자 회의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주(37) 프로그램, 단(36)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2차)

Q12	코로나19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1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 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 합니다.

주(37) 프로그램, 단(36) 기능향상 프로그램

Q13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제공자가 외부인으로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미실시하여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13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13) 수급자 상담관리

Q14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방문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4	평가지표 13에 따라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나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유선상담만 실시한 경우에도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사항

Q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 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일반사항 ... 추가(3차)

Q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국내 최초 발생한 2020.1.20일을 주의 단계로 시작하여 2020.1.27. 경계단계, 2020.2.23. 부터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안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 변화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안내 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 추가(4차)

Q3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진행이 어려워 다자간 메시지를 이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나 일부 위원들이 모바일 메시지 사용이 어려워 일부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자간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3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일부 위원이 모바일 메시지 사용이 어려워 서면과 모바일 메시지 사용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한 다하더라도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석여부와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20년 1, 2분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적기준 및 지자체 지도 점검 사항은 다를 수 있음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 추가(3차)

Q4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4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석여부와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20년 1, 2분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적기준 및 지자체 지도 점검 사항은 다를 수 있음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Q5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5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 예시 : 2020년 3월 '경계' 단계에서 '주의'로 변경 시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미 실시하여도 인정됨(2020년 2월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 시 1분기 회의 실시해야함)

평가지표 7(6) 인적자원개발 ... 추가(4차)

Q6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6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대면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의 실시계획, 수료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온라인 이수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교육 주최기관에서 발송한 실시 관련 공문, 교육주최기관 홈페이지 주소, 교육이수 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자 등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단,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평가지표 8(7) 건강검진 ... 추가(5차)

Q7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p>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1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p> <p>※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p>

평가지표 12(11) 지역사회자원활용

Q9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9	<p>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p> <p>※ 기존 202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기준①~③ 내용과 동일</p>

평가지표 22(21) 재난상황대응 ... 추가(3차)

Q10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0	<p>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의 단계일 경우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여야하며, 근거자료로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이 확인되어야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평가지표 27(26)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추가(4차)

Q8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취소되고 있으며, 보호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기관에서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A8	<p>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행사 개최 또는 지역사회 행사 참여가 무산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p> <p>※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p> <p>※ 예시 : 2020년 사업계획서</p> <p>※ 기존 20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의 기준④에서 파생된 지표</p>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4차)

Q11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1	<p>2020년 상반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하였는지를 회의록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p>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3차)

Q12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2	<p>2020년 상반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대표는 시설에 거주하므로 수급자 대표에게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p>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3차)

Q13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나요?
A13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은 교육방법은 반드시 집합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이버 강의 또는 소규모 교육 등을 통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 2021년 매뉴얼 기준 변경 사항 있어 2021.1.까지는 분기별 실시내역 2021.2월부터는 분기별 실시내역 확인

평가지표 33(32) 사례관리 ... 추가(4차)

Q14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회의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나요?
A14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시설 규모별 정기적 실시여부와 급여제공직원의 직종별 참석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의 의견을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렴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회의 진행 시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 드립니다. ※ 특정 직종에서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관계(관련 근거자료 등)를 확인하여 평가함

평가지표 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 추가(4차)

Q15	장기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계약의사(축탁의)의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평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15	수급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계약의사가 방문하지 못한 경우 등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번호(6045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안)' 참조

평가지표 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6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의사(축탁의)가 방문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커 수급자가 진찰을 거부할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6	계약의사(축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4차)

Q17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A17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2차)

Q18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A18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9	코로나19 관련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19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합니다.